

과징금 부과기준(제3조의7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.
- 마. 라목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월의 이전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지정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별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.
- 바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 (단위: 건)	1일당 과징금 금액 (단위: 만원)
600 이하	20
600 초과 1,200 이하	40
1,200 초과	60